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3고단2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  
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, 범인도피교사

피 고 인 A

검 사 강세현(기소), 변진환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곽지환(국선)

판 결 선 고 2014. 1. 23.

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,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#### 1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 및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

피고인은 00-0000호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, 2013. 7. 26. 21: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

양산시청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, 당시 그곳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후진하려고 하였다.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·좌우를 잘 살피고,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B(남, 30세)이 운전하는 00-0000호 옵티마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.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, 동승자인 피해자 C(여, 27세)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, 피해자 D(여, 27세)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옵티마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92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.

## 2. 범인도피교사

피고인은 2013. 7. 26. 22:3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교회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인 E에게 전화하여 '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,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고를 냈다.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.'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.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. 7. 27. 00:2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피고인의 부

탁에 따라 E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.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경찰 실황조사서, 현장사진

1. 진단서, 견적서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, 형법 제268조(치상후 도주의 점), 도로교통법 제148조, 제54조 제1항(손괴후 미조치의 점), 형법 제151조 제1항, 제31조 제1항(범인도피 교사의 점)

### 1. 상상적 경합

형법 제40조, 제50조(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,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)

### 1. 형의 선택

각 징역형 선택

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, 제42조 단서[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(위 죄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)]

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

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, 제2항

**양형이유**

-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친언니의 허위자백까지 교사하였다가 발각되는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
-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, 2회의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
-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함윤식 \_\_\_\_\_